



관리번호	규정-기획-2026-003
제정일자	2026.03.26 _ Rev.0
개정일자	

---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2026.03.26

주식회사 일 강

2026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담합

하도급거래

부당한 내부거래

# Contents 목차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1. 개요
2. 담합 유형
3. 담합의 추정
4. 위반시 제재
5. 담합 유의사항
6. 담합 사례

## II 하도급거래

1. 개요
2. 적용대상 및 거래사례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4. 하도급거래 위반 사례 예시

## III 부당한 내부거래

1. 개요
2. 부당지원 행위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4. 거래 단계별 유의사항

# 담합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1. 담합 개요

담합 ( 부당한 공동행위 ) 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합의, 결의, 정보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거래지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조정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며,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합은 명시적인 계약이나 협약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묵시적인 합의나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담합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합의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2. 담합 유형 제 40조

담합은 경쟁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예시 | 공동으로 가격 인상 · 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평균 가격, 기준 가격, 표준 가격, 최고 · 최저 가격 등 가격 설정기준을 정하는 행위
-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 등을 공동으로 설정하는 행위  
→ 예시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제한하거나 상품 인도일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생산량, 출고량, 거래물량 등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행위  
→ 예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분할하는 행위  
→ 예시 | 공동으로 거래처/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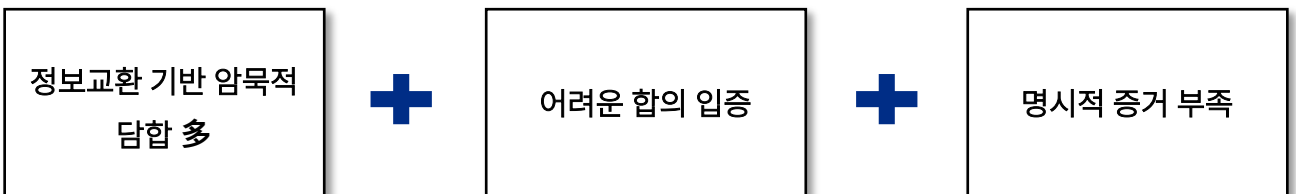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2. 담합 유형 제 40조

- 설비의 신설·증설 또는 장비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예시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예시 |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 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이를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예시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  
→ 예시 |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21년 신설 조항으로, 경쟁사 간 정보교환 합의로 시장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될 경우 위법에 해당합니다.



→ 암묵적인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 정보교환 행위를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2. 담합 유형 공동행위 심사지침

### ▶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성립요건

규제 경우

① 정보교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③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 정보교환 합의란?

가격, 생산량,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을 교환하기로 하는 상호 간의 의사 합의 ( meeting of mind ) 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보교환 합의의 종류

명시적 합의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암묵적 합의	경쟁사들이 가격인상 내부품의 직전에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그 품의에 경쟁사들의 가격 인상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사례 1) 4대 시중은행 정보교환 담합 ( '21년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적용된 최초 사례 )

사례

4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 LTV )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다. 각 은행 실무자들은 문서 및 대면 접촉을 통해 경쟁 은행의 LTV 수준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사 LTV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간 중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교환이 경쟁 사업자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을 회피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 수준이 장기간 유사하게 유지되어 소비자의 거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 4대 은행 과징금 부과 ( 총 2,720억 원 )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3. 담합의 추정 공동행위 심사지침

### ▶ 증거가 있어야 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담합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 등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하나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 ▶ 합의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증거 예시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원재료 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다름에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거래 빈도가 낮은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4. 위반 시 제재 및 자진신고 제 42조, 제 124조, 제 125조

### ▶ 위반 시 제재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금지, 중지명령 (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개인도 처벌 가능 )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중에서도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합 적발 시 기업의 평판 훼손, 거래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진신고

하지만 담합 행위는 사업자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제재를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담합 참여 사업자의 내부 신고를 유도하여 담합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담합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과징금	시정조치
조사 전 1순위 신고자	면제	면제
조사 시작 후 1순위 신고자	면제	감경 / 면제
2순위 신고자	50% 감경	감경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5. 담합 유의사항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이나 협의 과정에서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담합 예방 가이드라인 」

□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등 민감한 정보는 경쟁사와 교환 금지

□ 가격 및 판매조건 결정 시 경쟁사와 협의 정보교환 금지

□ 입찰 시 거래조건 등 공동행위 정보교환 금지

□ 경쟁사 인원과 모임 금지 ( 불가피하게 참여 시, 모임 성격과 내용 기록 )

□ 문서작성 시 오해가 있는 표현 사용 주의

□ 이메일, 메세지 등을 통해 담합 관련 논의가 있는 경우 거절 의사 표시

□ 가격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수신 시, 추가 송부 거절의사를 밝히고 증빙자료 준비

□ 외부 조사기관, 컨설팅사 등을 통해 비공개 정보수집 의뢰 금지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6. 담합 사례

### 행위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1 )

사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위법성 판단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경쟁 사업자 간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격 담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부당한 공동행위 ) 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과징금 부과 예정 ( 관련매출액의 최대 20% )

### 행위 2)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

사례

D사, M사, S사, H사 4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조업체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계기로 판매가격을 함께 인상하고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총 7차례 모임을 통해 STS 선재 300계 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법성 판단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경쟁 사업자 간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인상한 가격담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부당한 공동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4개 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총 34.16억 원 )

# I. 담합 ( 부당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장

## 6. 담합 사례

### 행위 3) 입찰 참여 사업자 간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는 행위 ( 1 )

사례

D사와 Y사 2개 자동차용 고무부품 제조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B사가 실시한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 ( 총 20건 ) 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총 20건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진 업체가 낙찰되는 등 담합이 실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경쟁 사업자 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 부당한 공동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총 11.46억 원 )**

### 행위 4) 입찰 참여 사업자 간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하는 행위 ( 2 )

사례

A사 등 8개 알루미늄 합금제품 제조업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 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입찰 전 모임을 통해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탈락 없이 물량을 확보하도록 담합을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경쟁 사업자 간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물량담합 및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8개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총 206.71억 원 )**

# 하도급거래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하도급거래 개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하도급법 특성

- ①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민·상법상 법정이자율보다 우선 적용됨
- ②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보다 우선 적용됨
- ③ 건설산업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중복 적용되며,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됨

### 2. 적용 대상 및 적용 대상 거래사례

- 하도급법 적용 대상 → 최초로 도급을 준 '원사업자',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비해당 기업
- 하도급법 보호 대상 →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중소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수급사업자보다 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외 사업자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적용 대상 및 적용 대상 거래사례

####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사례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 사례 1) 자동차 부품업체 A가 동호회에서 사용할 단체복을 의류제조업체 B에게 제작의뢰한 경우  
→ A업체의 '업'은 의류제작이 아니므로 하도급 거래에 **미해당**
- 사례 2) 수급사업자가 무등록 사업자  
→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하도급 거래에 **미해당**
- 사례 3)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부  
→ 단순구매에 불과하여 하도급 거래에 **미해당**
- 사례 4) 자동차 부품업체 A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제작의뢰한 경우  
→ 자기소비용 일반소비용품 제작은 하도급 거래에 **미해당**
- 사례 5) 자동차 부품업체 A가 제품 생산을 위해 협력업체 B에게 절삭 가공 공정을 위탁한 경우  
→ 자동차 부품 제조 과정의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거래에 **해당**
- 사례 6) 기계부품 제조업체 A가 생산한 부품의 표면 도장 작업을 외주업체 B에 위탁한 경우  
→ 제조공정 일부를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 거래에 **해당**
- 사례 7) 자동차 제조업체 A가 협력업체에게 부품제조 의뢰 또는 부품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  
→ 하도급 거래에 **해당**
- 사례 8) IT 회사 A가 자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중 소프트웨어 개발 일부를 B 회사에 맡긴 경우  
→ 동일 업종의 용역위탁으로 하도급 거래에 **해당**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계약 체결단계 유의사항

서면교부 및 보존 하도급법 3조

내용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 거래 종료부터 3년 )

서면발급 기한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제조위탁 : 제조위탁 및 추가 · 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 :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 · 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 :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 · 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 :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 ·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세부사항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 : 일부 누락 시, 서면 미발급에 해당

- 목적물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 기일
-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 수량 · 제공일 ·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 방법 · 절차

사례

S사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계약 체결단계 유의사항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법 3조의 4

내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을 금지한다.

세부사항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사항

- 원사업자가 서면 내 미기재 요구사항의 발생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처리

사례

Y건설은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였다.

## II.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계약 체결단계 유의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4조

#### 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지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사례

D건설은 '15년 11월부터 '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 900만원보다 6억 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원사업자 계약이행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5조

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	- .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의뢰 시 - . 특정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7조

내용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개설 시 )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하도급법 8조

내용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금지행위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원사업자 계약이행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9조

내용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간 내 미통지 시, 합격한 것으로 판단)

##### 부당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10조

내용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해서는 아니된다.

금지행위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원사업자 계약이행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 3

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무 및 금지	<p>협력사의 기술자료 요구 금지 ( 단, 정당한 사유 입증한 경우에는 가능 )</p> <p>정당한 사유 : 제조 등 위탁목적 달성 위해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예) 공동특허 개발, 공동기술개발 약정, 대금 인상폭 결정, 제품 하자 원인규명 등</p> <p>서면발급 · 비밀유지계약 의무</p> <p>협력사 협의하여 최소 범위 내 기술자료만 대상으로 적법한 형식 서면 교부 통해 요구 협력사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 체결</p> <p>기술유용 · 제3자 제공 금지</p> <p>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회사를 위해 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 금지</p>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18조

내용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행위	<p>정당한 사유 없이,</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li><li>2.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li><li>3. 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li></ol>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원사업자 계약이행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19조

내용	수급사업자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li><li>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li><li>3.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li></ol>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20조

내용	하도급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지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li><li>2.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li><li>3.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li></ol>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대금지급 시 의무사항

####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법 6조

내용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의뢰 시 - 특정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 13조

내용	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만약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미지급 처리 -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판단 -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일괄 마감하는 날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정의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법 17조

내용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사유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대금지급 시 의무사항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16조

내용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설계변경, 납품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li><li>- 계약금액이 증액 /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는 15일 이내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li><li>-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계약금액을 증액 /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li><li>-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이자 및 어음 할인료 지급</li></ul>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하도급법 16조의 2

내용	수급사업자는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li><li>-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li><li>- 단계적 하도급대금 인하 계약 체결 후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대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li></ul>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하도급거래 시 의무 및 금지사항

####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3조

내용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위탁 이행 의무 하도급법 21조 1항

내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위법행위 협조거부 하도급법 21조 2항

내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증거제출 하도급법 21조 3항

내용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II.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 하도급거래 위반 사례 예시

#### 사례 1)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함
-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함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과정에서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11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3.78억 원 )

위법성 판단 ▶ 교부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 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감액 등

#### 사례 2) 자동차 부품업체 H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 자동차 공조시스템 제조업체 H사는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함
- 금형 제조 거래 1,236건 중 일부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고, 일부는 별도 계약임에도 '금형 수정'으로 분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 통지 의무 다수 위반함
- 또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14.07억 원 )

위법성 판단 ▶ 서면,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 의무 위반, 대금 지연 지급 등

# 부당한 내부거래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III. 부당한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장

## 1. 부당한 내부거래 개요

부당한 내부거래란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 또는 총수일가에 경제적 이익 집종의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내 효율적 경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거래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거나 합리적 비교 없이 특정 계열사에 거래를 집중하는 경우 부당 지원행위 또는 사익 편취 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집단 영향력 강화

한국 경제 내 절대적 비중  
일감 몰아주기

### 시장경제 발전 저하

우량 중소기업 시장 내 부당 축출  
계열사 기반 경제집중 현상 심화

→ 규제 기반 국민경제 균형 발전 도모 및 경제력 집중 현상 개선

## 2. 부당지원 행위

### 공정거래법 제 45조 제1항 제9호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지원 및 거래 왜곡 행위 제한

### III. 부당한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장

#### 2. 부당지원 행위

##### 행위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래조건 지원행위 )

**사례** G사는 2009.1.1.부터 2019.3.31.까지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하여 계열회사인 K사에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K사는 외장형 순환펌프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지원을 받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 G사, K사 과징금 부과 ( 총 36.8억 원 )

##### 행위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금융거래 지원 )

**사례** 기업집단 'E'의 지주회사 E 등이, 자본잠식 상황에 있는 다른 계열사 F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목적에서 이들이 손쉽게 영구전환사채 (PCB, Perpetual Convertible Bond) 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동 PCB를 인수하는 금융회사와 총 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였다.

→ M사, J유업 과징금 부과 ( 총 7.79억 원 )

# III. 부당한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장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공정거래법 제 47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4조

국내계열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관계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특수관계인	당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 ( 동일인 ), 동일인 관련자
동일인 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친족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li><li>·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li><li>· 동일인과 통상범위를 초과한 채무보증에 있는 회사</li><li>· 동일인이 경영 지배력 행사 가능한 계열회사</li></ul> <p>동일인이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p> <p>동일인이 조직변경 또는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가능한 회사</p> <p>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p>

### 금지행위

-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4)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위반 시,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 III. 부당한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장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 행위 1)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1)

사례

S사는 재인발 업체인 계열회사 C사의 수익 개선을 위해 C사에만 적용되는 물량할인(QD) 제도를 신설하여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위법성 판단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물량할인 제도가 C사만 달성 가능한 조건으로 설계되어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C사가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S사, C사 과징금 부과 ( 총 32.76억 원 )

### 행위 2)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2)

사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의 2세 회사인 P사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P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P사는 S산업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7,496백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P사는 국내 분체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 S산업 67.47억 원, P사 48.73억 원 과징금 부과

# III. 부당한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장

##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 행위 3) 자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타사에 제공한 행위

사례

J건설은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가진 A, B건설이 '벌떼입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설 실적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위반기간동안 A, B 건설은 각각 1,574억 원, 848억 원의 시공매출을 획득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 J건설, A, B건설 과징금 부과 ( 총 96.89억 원 )

### 행위 4) 특수관계인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례

C사는 파생상품인 총 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사실상 신용보강 ·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무위기에 있던 계열사 C건설과 A사가 영구전환사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위법성 판단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금융상품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부실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부당지원행위로서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조건을 제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C사 15.77억 원, C건설 28.4억 원, A사 10.62억 원 과징금 부과

### III. 부당한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장

#### 4. 거래 단계별 유의사항

단계 1)	거래개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통행세거래 해당여부 점검 통상적 대가에 비해 과도한 대가 지급 여부 확인 거래상 역할 없는 회사 거래 단계 내 추가 여부 확인</li><li>□ 사업기회 제공여부 점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다른 계열사에게 제공했는지 확인</li></ul>
단계 2)	거래상대 검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열사 거래의 적절 / 정당한 사유 점검 적절한 비교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점검 ( 경쟁입찰 , 견적비교 , 시장조사 ) 업체 선정 결정 과정 문서화 필요</li><li>□ 수의계약 사유 확인 경쟁입찰이 불합리함을 증명할 증거 확인 내부정보 보호로 인해 경쟁입찰 시 회사 손해 발생 예상 등</li></ul>
단계 3)	거래조건 검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당 여부 점검 일반 시장가격 대비 유사한 가격 조건인지 확인</li><li>□ 일감 몰아주기 해당 여부 점검 정당한 사유 / 합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는지 확인</li></ul>



주식회사 일 강

##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

---

발행처 (주)일강

발행일 2026.03.25

담 당 기획팀 / ESG경영